

#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

소관부서 : 홍보담당관

제정 2022·11·11 조례 제1867호  
일부개정 2023·9·27 조례 제1981호  
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 
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고 예우하며 향토애 함양 및 이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천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이천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상의 명칭)** 상의 명칭은 “자랑스러운 이천인상”(이하 “이천인상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수상대상자)** 이천인상은 제6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한 자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시민 중에서 5명 이내로 수여한다. 다만,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여 수여할 수 있다.

1.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 및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사람
2.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공헌한 사람
3.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에 공헌한 사람
4. 기타 시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(본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)

**제4조(자랑스러운 이천인증 수여)** ①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랑스러운 이천인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랑스러운 이천인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이중시상의 금지)**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천인상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.

**제6조(수상후보자 추천)** ① 이천인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·9·27>

1.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
2.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
3. 20세 이상의 이천시민(다만,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에 한하여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)
4. 시장(다만,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

② 수상후보자 추천 방법은 「이천시 포상 조례」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.

**제7조(위원회 구성)** ① 이천인상 수상자(이하 “수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천인상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,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
1. 제3조 각 호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
2. 제3조 각 호의 공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⑤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시에 한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, 위촉직 위원은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는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이천인상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 또는 수상후보자에게 위원회에 출

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상)** 이천인상의 시상은 매년 이천시민의 날 또는 연말행사에서 시행한다. 다만, 추천 및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10조(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)** 이천인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.

**제11조(수상자 우대)**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.

1. 감사패 수여
2. 시 각종 공식행사 초청 및 교육강사로의 초빙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

②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와 그의 공적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선정 취소 등)** 시장은 수상자가 「상훈법」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13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(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「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」에 따른 수상자

② 「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 바목 1)에 사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

사) 「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」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 
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


부칙 <2023·9·27 조례 제1981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 
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예 관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《내국인의 경우》

《앞 면》

제 호	<b>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증</b>
사 진	○ ○ ○ 위 사람은 자랑스러운 이천인임을 증명합니다.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 이천시장 ○ ○ ○ (직인)


《뒷 면》

이 증을 소지하신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은  
행정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 
주시기 바랍니다.

《외국인의 경우》

《앞 면》

제 호	<b>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증</b>
사 진	○ ○ ○ 위 사람은 자랑스러운 이천인임을 증명합니다.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 이천시장 ○ ○ ○ (직인)

《뒷 면》

No  
**Certificate of Proud Citizen of  
Icheon City**

○ ○ ○

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 
earned the title of Proud Citizen of Icheon City.  
month day year  
Icheon City, sign  
Republic of Korea Mayor, ○ ○ ○

규 격	비 고
· 기본규격 8.5cm × 5cm ※ 변형 가능	1. 재질 : 플라스틱 2. 바탕 : 흰색 3. 글씨 : 검정색

